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황운하 · 김선민
임호선 · 진선미 · 김재원
백선희 · 박은정 · 서왕진
정을호 · 신장식 · 윤준병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,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,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·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교비회계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,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,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,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

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73조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73조 중 “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”
를 “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7항
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회계의 구분 등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9조(회계의 구분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</u> <u>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</u> <u>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</u> <u>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</u> <u>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</u> <u>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할</u> <u>수 없다.</u>
제73조(벌칙)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나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 사)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<u>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</u> <u>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</u> <u>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</u> <u>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 <u>에 처한다.</u>	제73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9조제6항(제51조에 따라 준</u> <u>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</u> <u>제7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</u> <u>경우를 포함한다)을</u> ----- ----- -----.